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-12호

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

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3. 23.
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처분대상

업체명 [업허가 번호]	업종 및 허가번호	대표자	소재지
아주메딕스(주)	의료기기제조업 제845호	김재수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길 50
시크릿자석 건강의료기기	의료기기제조업 제3775호	양동화	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47길 22-23, 2층

2. 처분사항

○ 과태료 50만원 부과(납부기한 : 2021. 4. 22.)

* 납부고지서 발부 문의: 062-602-1306

3. 처분사유

○ 2019년 의료기기 생산실적(생산실적 없음 포함) 미보고

4. 근거법령

○ 의료기기법 제13조(제조업자의 의무)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위반

○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나목에 근거하여 처분

5. 고지사항

○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[※ 문의: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유경 / 062-602-1306]